

이런 농약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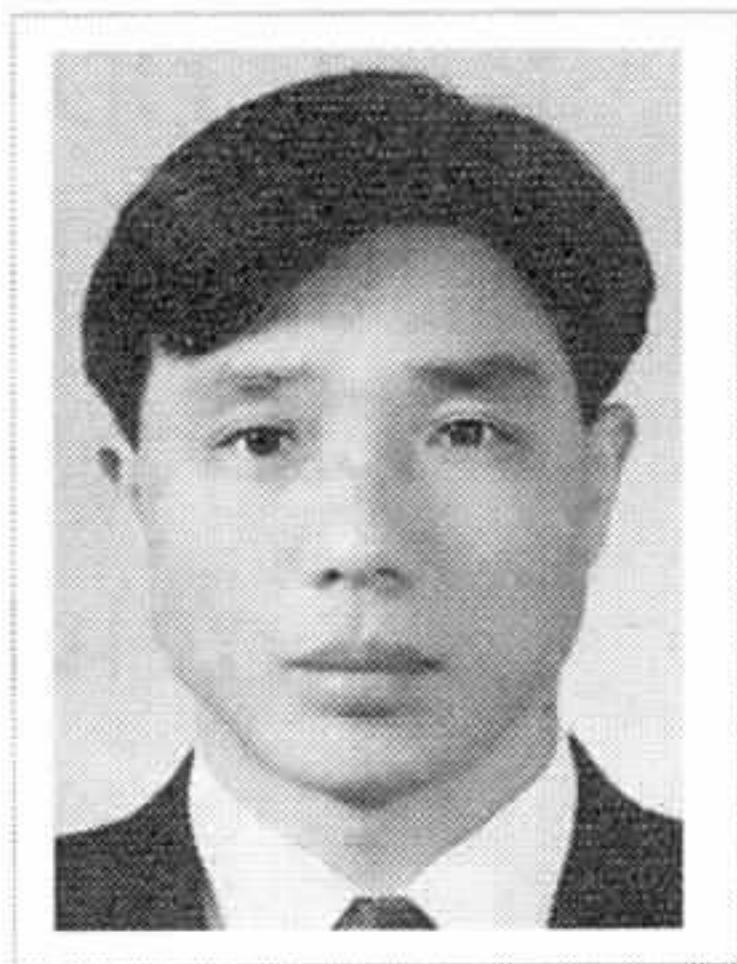
# ‘부정·불량·밀수입’ 농약 약효·피해보상 담보 못해

농약 구입시 ‘제조모집단번호·약효보증기간·포장지·검사필증’ 등 확인하고  
‘불량농약’ 제조회사에 반품, 등록 안 된 밀수입농약 절대 판매 사용 말아야

**농**약의 품질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농약의 원·부재 구입에서부터 제조와 유통과정을 거쳐 농민들이 사용하는 과정까지의 종합적 품질관리와 좁은 의미에서 시중유통과정에서의 사후적 품질관리, 다시 말하면 유통농약의 품질검사와 시중 유통단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통농약의 품질검사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초 「농약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7조에 따라 직권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의 농약 제조업체가 출하 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시중에 출하하여 유통되고 있는 농약을 발취, 품질확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격된 품목은 동일 모집단을 전량 수거 조치하는 등 불량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농약 단속공무원이 판매상에서 농약을 발취하려는 것은 이와 같은 품질검사를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중 유통단속은 시중 농약판매상이나 무



이자현  
농촌진흥청 농산업자원과

등록 판매업소를 단속하여 무등록, 밀수입 또는 유사농약 등 소위 부정 농약을 적발하여 판매금지 시키고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이나 포장지가 훼손되어 무슨 농약인지 알 수 없는 농약 등 불량농약을 적발하여 국내 농약시장에서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발본색원하기 위함이다.

## 부정·불량농약이란?

### ● 부정농약

농약은 넓은 의미에서 농작물을 해하는 병해충과 잡초방제 그리고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모든 약제를 말하며 법적인 용어 정의도 명확하다.

그럼에도 요즘 시중에 나돌고 있는 소위 부정 농약으로 분류되는 무등록, 유사농약들을 보면 한결같이 포장지에 “농약”이 아니라고 써 놓았지만 실제로는 농약의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표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무공해 농약”이니 “화학제품”이 아닌 천연물질로 제



조하여 병해충 방제와 증수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선전을 하고 있다. 농약을 판매하는 판매상이나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절대 이런 선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전문적인 시험연구기관에서 3년에 걸친 약효·약해·독성·잔류성(작물·토양·수질오염)시험 등 국내 적응시험을 실시하여 약효가 인정되고 약해가 없으며 잔류기간이 짧고 독성검증을 받은 후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약으로서 등록한 후 제조, 판매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농약으로 등록되어 생산된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약효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약효가 없거나 약해를 입었다면 관련 제조업체로부터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유사농약을 구입 사용하여 약효도 없고 약해가 나서 농사를 망쳤다면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부정농약이 선전하는 대로 좋은 농약이라면, 국내 적응시험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제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하지 왜 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점조직과 같은 판매망을 통해 판매를 하겠는가? 이 점을 판매상이나 우리 농민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약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사용자인 농민들은 등록된 국내 농약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정상적인 제품 외에는 아예 구입도 사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파클로부트라졸’ 등 국내 미등록 농약을 엽채류 작물에 사용하여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농식품안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감시를 강화하여 밀수입업자를 엄벌함은 물론 사용농가도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서 먹을거리 안전성을 위협하는 불

법행위를 뿐만 아니라 계획으로 있다.

물론 ‘파클로부트라졸’은 일본,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 생장조정제 농약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안 된 미등록 농약으로 엄연히 부정농약이다. 유통경로는 밀수입 업자(보따리상)가 중국산 ‘파클로부트라졸’을 화학물질이라고 속여 항구 등을 통해 소량씩 밀수입하여 농가에 직접 판매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런 농약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잔류농약검사에서 검출될 경우 회수, 폐기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인증이 취소되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만약 이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판매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제조업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판매상이 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부정농약은 제조자를 추적 조사하여 발본색원하려 하고 있으나 판매망이 거의 점조직 형태여서 단속에 애로가 많다. 이와 같은 농약을 구입하거나 사용했을 때는 금전적인 손해와 인력낭비, 약해발생 등 피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런 농약은 절대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 하겠다.

## ● 불량농약

불량농약이란 농약제조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잘못 만들었거나 정상적인 농약이 약효보증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운송 보관 중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겨나는 불량품을 말한다. 이런 농약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 불량농약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농약은 화학제품으로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약효를 나타내는 주성분이 분

## 이런 농약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

해되어 줄어들기 때문에 약효도 그만큼 떨어진다. 농약마다 포장지에 약효보증기간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구입할 때 확인하여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의 연도제를 실시하고 있어 매년 10월 말일자로 해당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되므로 농약판매상에서는 10월말일이 지나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것은 수거하여 제조회사로 반품하고 새로운 농약으로 교환해야 한다.

**포장지 훼손 농약** 농약 포장지가 찢어진 것과 약액이 흘러넘치거나 오물이 묻어 포장지가 훼손되어 무슨 농약인지 또는 약효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농약은 판매할 수도 없고 사지도 말아야 한다.

**검사필증 미 부착 농약** 농약 제조업자가 농약을 제조한 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주성분이 이상이 없으면 병마개 부위에 반드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않은 농약은 위조농약일 수도 있으므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한다.

### 농약판매상이 지켜야 할 사항

#### ●부정·불량농약 판매금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정상적인 농약은 국내시험을 거쳐 농촌진흥청에 등록을 한 후 그 품목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된 농약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농약이 아니면 모두 부정농약이다. 또한 포장지 표기내용이 일반농약과 다른 것, 예를 들면, 모집단번호는 제조연월과 일련 번호(08년 8월에 제조한 다섯번째 모집단은 0808-05)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엉뚱한 번호를 썼다든지, 안전사용기준이나 주의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거나 농약이 아니라고 써 놓고도 사용방법이나 적용대상에는 병해예방 또는 충해방제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도 모두 부정농약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되다가 위해성 문제로 품목이 폐지된 농약도 모두 부정농약으로서 이와 같은 농약을 팔아서는 안 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품목이나,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 또는 포장지가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은 모두 불량농약이므로 이것 역시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농약은 해당 제조회사에 연락하여 모두 반품해야 한다.

#### ● 법규위반 행위

다음과 같은 행정법규도 지켜야 한다. △모든 농약의 구입과 판매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할 때는 제출해야 함 △취급제한기준(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을 지켜야 하며 고독성농약은 다른 농약과 구분하여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진열장에 보관하고 판매 시는 장부에 구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두어야 함 △농약판매업 등록 시 확보한 시설 중 창고시설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만약 창고가 없으면 시설기준 위반이 되므로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 불량농약의 처리

불량농약 즉,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과 포장지 훼손농약 그리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농약은 언제라도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매년 10월이 되면 약효보증기간 도래품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제조회사에



반품되도록 해야 한다. 또 농촌진흥청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농약은 시·군과 농약 제조사가 모두 수거에 협조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조사나 시·군에 연락하여 수거하도록 한다.

### ● 알아야 할 처벌규정

이 같은 농약판매상이 지켜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이 농약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조치와 행정형벌이 함께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로서 1회에 경고가 주어지고 행정형벌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현행 「농약관리법」 제31조의 2에서 제35조까지가 모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들이다.

### 등록권자의 조치사항

현행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가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판매업의 등록권자는 시장·군수이다 등록권자는 시중 판매상에 대한 지도, 감독과 행정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내의 판매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알고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 ●부정·불량농약의 처리

시·군 단속공무원이 시중 농약판매상에서 부정·불량농약을 적발하거나, 중앙단속반의 적발 사항을 인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농약을 봉인 조치하고 농촌진흥청 고시 “부정·불량농약처리 요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농촌진흥청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한 수거조치

가 잘되지 않고 있다. 이는 농약제조회사에서 제출한 당초 출하지역과 실제 그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처음 제조회사로부터 농약을 구입한 도매상이 다시 타 지역의 도매상이나 소매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입력된 당초 출하지역의 판매상에만 수거공문을 보내서는 완전한 수거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불합격 농약에 대한 수거공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관내 전 농약판매상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재고량을 파악, 수거를 해야만 완벽한 수거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의 농민들은 불합격품목을 모르고 사서 쓸 수 있고 이로 인해 약효가 없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해 시·군 단속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부정·불량농약을 판매하거나 농약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시군에서는 행정처분만 하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예도 있다. 예를 들면,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농약판매상에 대하여 행정조치로서 경고만 하고 농약관리법 벌칙규정에 따른 조치는 하지 않는다면 단속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농약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중앙단속반의 부정·불량농약 단속업무 집행에 대해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 제33조에 따라 처벌이 가볍지 않다. 이 점도 주지시켜서 관내 판매상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7